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위임범위의 일탈, 미 규정사항 등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, 대·중·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성비를 규정(안 제8조)
-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의 사유를 신설(안 제11조)
 -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
(안 제11조제4항제1호)
 - 주택 재개발,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
(안 제11조제4항제2호)
-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“지정·변경대상”을 “지정·변경·취소대상”으로 변경(안 제12조)
-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을 삭제(안 제13조)
 -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등을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
것으로,
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상위법에서
위임되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 제한에 관한 규제조항
삭제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사유 규정 신설을 위해
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됨.